

2022년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사업 연구개발과제/임상시험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내 화장품·뷰티산업 사업화 기반 제품 고도화와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사업의 ‘뷰티 연구개발과제’ 및 ‘뷰티 임상시험과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1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 2022년 지원기업 공지사항 <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적용안내 >

경기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7일부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2-5003호)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위반사실 조회등의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사업
- 사업규모(‘22년) : 350백만원(경기도)
- 지원기관 : 경기도,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 세부과제명(모집분야) : 뷰티 연구개발과제(R&D) 및 뷰티 임상시험과제
- 사업목적 : 도내 뷰티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과제를 지원하여 뷰티 제품의 사업화 및 제품 고도화 실현
- 지원내용 : 뷰티 연구개발 분야 개발 직접비 및 맞춤형 임상시험비 지원

II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 * 화장품법 제2조 2항 참조
 - 지원 대상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나, 개발 장소는 경기도 소재지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기업

- 경기도 법외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p5, 기타안내사항 참조
 -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사업 관리지침(2022.03) 6조 가)항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자격, 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기업
- ※ 단,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의 경우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주관단체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III 지원내용

□ 지원내용 (2개 과제 중 택1)

- ① 연구개발과제 : 소재개발, 제형개발, 원료개발 등 신제품 개발 및 제품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제 개발직접비 지원
- ② 임상시험과제 :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 입증을 위한 맞춤형 효능 임상시험비 지원

□ 지원기업 : 총 30개사 (2개 과제 통합 순위별 선정)

* 과제별로 지원기업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기업수요에 맞춰 신청·접수 후, 신청과제를 구분하지 않고 최종평가점수에 의한 선정, 등급(A/B/C) 부여하여 지원금 차등 책정함.

- 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직접비 또는 임상시험비 최대 10,000천원 (지원금의 30% 자부담 의무)
(예) 지원금 10,000천원 + 자부담 3,000천원(지원금의 30%, 현금 기준)
 - 기업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조정(8,000천원 ~ 10,000천원 내)
 - (A등급/10개사) 최대 10,000천원, (B등급/15개사) 최대 9,000천원, (C등급/5개사) 8,000천원
- 지원항목
 - ① 연구개발과제 : 재료비,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수집비, 전문가활용비 등 개발직접비
 - ② 임상시험과제 : 기능성 화장품 평가, 기초 화장품 평가, 색조화장품 평가 등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 입증에 위한 맞춤형 효능 임상시험비
- 개발기간 : '21. 5월 ~ 12월

IV 추진일정(안)

사업 공고	신청 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기업선정 및 협약체결	과제 수행	중간점검	최종보고	최종평가
3/21	3/21 ~ 4/08	4/11 ~ 5/12	5/13 ~ 5/25	5/25 ~ 12/2	8~9월	12/9	12/15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V 신청 및 선발방법

- 선발내용 : 뷰티 연구개발과제 및 임상시험과제 수행기업 30개사
- 선발기준 :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 서면/대면 평가
 - 1차 신청서 요건 검토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요건 검토
 - 기업 및 공장 소재지, 지원 제외사항, 사업계획서 필수 기재사항 등 검토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른 법위반사항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NTIS) 상 과제 중복성 검사 실시(연구개발과제 해당)

○ 2차 서면심사

- 외부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성과 실현가능성 및 추진목표,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정량적 평가
- 재무건전성(15), 기술성 및 사업계획 적절성(50), 과제 기대성과(35), 평가가점(5)
- 과제심사 평가기준 60점 이상, 고득점 순 과제 선정 (45개사 내외)
 - * 대면평가 대상기업 선발은 최소 40개사로 하며, 사업계획 등이 우수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 의견에 따라 45개사 내외로 대면심사 대상기업으로 선발 가능

○ 3차 대면심사

-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세부과제내용의 적절성, 수행가능성, 효과성, 사업비 활용 적절성, 목표실현가능성 등 정성평가
- 수행기업 보유역량(10), 과제 적정성(40), 시장성 및 기술력(30), 기대효과(20)
- 과제심사 평가기준 60점 이상, 고득점 순 과제 선정(30개사, 예비 5개사)

○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외부 심의위원회의 조정의견사항 및 지원금 결정사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기업자부담(보조금 지원액의 30%)금 납부확인 후 협약 체결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조정이 어려울 경우 예비기업 차순위 기업 선정
- 과제수행 : 2022. 5월 25일 ~ 12월 2일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 기간 : **‘22. 4월 8일(금) 17시 까지**
-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전자메일 접수 (js35ru@gsmba.kr)
 - ① 하단 **신청구비서류 일체(연번 1~15번)를 연번순으로 정렬, PDF파일 변환하여** 제출 (파일명: 지원과제_기업명.pdf) *반드시 1개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 ②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한글파일 작성본(별첨1)** (파일명: 지원과제_기업명_사업계획서.hwp)
 - ③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요약서(별첨2)** (파일명: 연구개발과제_기업명_요약서.xlsx)

=>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총 3개 파일(①+②+③), 임상시험과제의 경우 총 2개 파일(①+②)을 이메일 첨부파일로 전송

○ 신청 구비서류

연번	구비서류	비고	제출파일형식	
1	[서식1]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공통필수	PDF * 1~15번 문서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2	참여자격 증빙서류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확인서)			
3	[서식2] 기지원, 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4	[서식3]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5	[서식4] 자가진단표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7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8	재무제표 사본(최근년도)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서식5]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1	[서식6] 범위반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12	기술력 증빙서류(특허, 실용신안, ISO인증 등)			공통선택 (해당시 제출)
13	공장등록증명원			
14	가점항목 증빙서류			
15	임상시험 견적서			임상시험과제 필수
별첨1	[서식1]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u>작성본</u>	공통필수	한글	
별첨2	[서식1-1] 연구개발과제 사업계획 요약서	연구개발과제 필수	엑셀	

* 구비서류 1~14번, 별첨1은 공통, 15번은 임상시험과제만 해당, 별첨2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

□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기간 경과시 미제출 간주)

* 접수마감일(4/8 17시)까지 필수제출서류 미비 및 필수사항의 공란의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제출 요망

VI 기타 안내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기업 및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신청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다음의 사유 발생시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사업 참여기간 중 본사 및 공장이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 사실여부 확인서 등 제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제한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적용법률(11개 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식품 등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자세한 사항은 별첨 ‘220103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도보)’ 참조

- 신청서 허위 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남정숙 주임
 - Tel: 031-8064-1089 / Fax: 031-205-4700 / Mail: js35ru@gsmba.kr

【붙임】세부평가 기준표

뷰티 연구개발과제 및 임상시험과제 세부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적격성 평가	자격요건 충족여부	1)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 적정성 2)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3) 지원제외기업 대상 적/부 확인	
	중복과제검토	1) NTIS 과제 중복성 검토(적/부)	
	사업참여 제한여부	1) 경기도 사업 참여 제한 여부(적/부)	
	범위반사실 여부	1) 범위반사실여부 검토 (적/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1. 재무건전성 (15)	1.1.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5	100%미만(5), 100%이상~200%미만(3), 200%이상~300%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1.2.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5	100%이상(5), 50%이상~100%미만(3), 0%이상~50%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1.3.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5	10%이상(5), 5%이상~10%미만(3), 2%이상~5%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2. 기술성 및 사업계획 적절성 (50)	2.1. 기술개발/임상시험의 필요성 및 과제적합성	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2.2. 과제수행 준비의 적정성 (선행연구, 연구인력, 연구시설 보유 등)	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2.3. 기술개발/임상시험의 목표 및 방법, 기간의 적정성	20	매우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매우미흡(4)
	2.4.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3. 과제 기대성과 (35)	3.1. 목표시장의 규모(성장성) 및 진입가능성	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3.2.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수출, 매출, 수입대체효과 등)	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3.3. 과제수행 후 양산 및 판로확보 계획의 적정성	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3.4. 고용유지 및 신규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정성	5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합 계		100	
평가가점 (5)	기업인증	5	* [참고1] 가점사항의 해당 여부에 따라 최대 5점 부여

【참고1】가점사항

연번	가점 사항	확인	가점
①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 약정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서	1점
②	ISO GMP 또는 식약처 GMP(CGMP) 인증 획득 기업	화장품GMP 인증서	1점
③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점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1점
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1점
⑥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1점
⑦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10조 및 제11조 2항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1점
⑧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1점
⑨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 ~ 50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확인서	1점
⑩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확인서	2점

* 가점사항 확인 가능한 제출서류 미비 혹은 신청시 유효한 서류가 아닐 경우 가점 인정 불가